



보 도 자 료

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4. 8.(금)	
담당 부서	교육과정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지현 (044-203-6729)
	교수학습평가과	담당자	교육연구관	김도영 (044-203-6447)

코로나19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관련 긴급회의 개최

- 모든 시도교육청,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 유지 협의 -

주요 내용

- 17개 모든 시도교육청과 학생 입장·평가의 엄중함·학교 여건 등 논의
- 학교현장의 의견 및 평가의 공정성·형평성,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 위험, 학교의 부담 등을 고려 현행 방침(확진자 미응시) 유지

□ **교육부**(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)는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실시되는 중·고등학교 중간고사에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과 집중 협의하고자 긴급으로 비상 점검·지원단 회의를 4월 8일(금)에 개최하였다.

□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들은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되어 등교할 수 없으므로, 그동안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*을 부여받았다.

*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성적 인정점수로서, 17개 모든 시도에서 코로나19 관련 결시에 대해서는 100% 인정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점을 산출하고 있음

□ 교육부는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와 관련된 현장 의견수렴*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학교 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, 오늘 회의를 통해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확인하였다.

*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및 협의회(2022.1.이후 7회), 학교 현장 면담 등 실시(2022.2.~4.)

-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의 경우에도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되었던 학생들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,
 -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다른 여건으로 인한 별도 고사실의 차이, 동일 학교 내에서도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의 차이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평가의 공정성 유지가 어려움을 우려하였다.
 - ※ 학교 여건상 부득이 강당·체육관 등 일반 교실이 아닌 장소를 별도 고사실로 활용하는 경우 등 평가 환경의 차이로 인한 공정성 저하 우려
 - 또한, 5,700여 개의 중·고등학교가 학교당 3~5일간 중간고사를 실시할 경우 확진 학생의 장기간 외출에 따른 교내·지역사회 등에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,
 - 감독으로 배정되는 교원의 수급문제,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와 반발, 비(非) 확진 학생 및 학부모의 반발도 우려하였다.
 - ※ 기저질환 등 건강 관리 학생들의 감염병 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응시 포기 우려 등
- 아울러, 확진 학생의 평가 응시를 허용하더라도 응시 강제는 불가능하여 확진 학생이 시험 응시와 성적 인정점 간 유불리를 고려하여 응시 여부와 응시할 과목을 선택할 경우에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임을 우려하였다.
- 한편, 확진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출 및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경우, 현 고2·3학년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.
 - 최근 확진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상황에서 비교적 장기간(3~5일)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평가 시행으로 인해 학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.
-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,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위험, 학교 현장의 평가 외 방역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.

- 【붙임】** 1. 중·고교 1학기 중간고사 일정
2. 확진자 응시 가능 국가시험과 학교지필고사 비교
3. 시도교육청의 확진자 중간고사 관련 의견(요약)

붙임 1

중·고교 1학기 중간고사 일정

□ **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일정 (5.13. 전까지 95.30%)**

고교	1학기 중간고사 시작일				1학기 중간고사 종료일			
	기간	학교 수	비율(%)	누적	기간	학교 수	비율(%)	누적
2,404 교	4.11. ~ 4.15.	3	0.13	0.13	4.18. ~ 4.22.	44	1.83	1.83
	4.18. ~ 4.22.	93	3.87	4.00	4.25. ~ 4.29.	1,332	55.4	57.23
	4.25. ~ 4.29.	1,797	74.75	78.75	5.2. ~ 5.6.	883	36.73	93.96
	5.2. ~ 5.6.	365	15.18	93.93	5.9. ~ 5.13.	35	1.46	95.42
	5.9. ~ 5.13.	33	1.37	95.30	그 외	110	4.58	100
	그 외	113	4.7	100				

□ **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 일정 (5.13. 전까지 83.37%)**

중학교	1학기 중간고사 시작일				1학기 중간고사 종료일			
	기간	학교 수	비율(%)	누적	기간	학교 수	비율(%)	누적
3,300 교	4.18. ~ 4.22.	79	2.4	2.4	4.18. ~ 4.22.	74	2.25	2.25
	4.25. ~ 4.29.	1,760	53.33	55.73	4.25. ~ 4.29.	1,725	52.27	54.52
	5.2. ~ 5.6.	891	27	82.73	5.2. ~ 5.6.	931	28.21	82.73
	5.9. ~ 5.13.	21	0.64	83.37	5.9. ~ 5.13.	21	0.64	83.37
	그 외	549	16.63	100	그 외	549	16.63	100

붙임 2

확진자 응시 가능 국가시험과 학교 지필고사 비교

	응시 가능 국가시험	학교 지필고사
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일 · 휴일 시행 가능 → 자가용 등 이용 권장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3~5일 · 휴일 시행 불가 → 대중교통 이용 배제 어려움
시행 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체로 연 1회 하루 시행 ※ 국가자격시험, 수능, 국가공무원 시험, 영재 학교 전형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필고사 기준 연 4회, 회당 3~5일 ※ 학교장이 지필고사 횟수·기간 등 결정
시험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수의 특정 시험장 운영 → 시험장 관리·통제 등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국의 중·고교(중 3,300교/ 고2,404교) → 교실·교원 수 등 학교별 격차가 커 별도 고사실 운영 강제 어려움
특이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5급공채 시험 - (1차, '22.2.) 전담병원·생활치료센터(8곳)에서 응시, 당시 확진·격리 응시생은 77명 ※ 대중교통 이용 금지 - (2차, '21.7.) 시험응시 전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응시 · 변호사 시험('22.1.) - 중증 확진자는 병원(7곳), 경증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(6곳)에서 입원하여 응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담병원 등이 아닌 단위학교별 별도 고사실 운영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권고하더라도 평일이며 보호자의 조력없이 자차 이동이 어려울 경우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있음

1. 형평성 훼손

- ① 이전 학년도 별도 고사실 미운영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
- ② 2020~2021년 등교중지(특히,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진단검사 등의 사유로 등교중지된 학생)로 인한 인정점 부여 학생 대비 역차별 현상 발생
- ③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의 평가 환경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별 유불리 사항
- ④ 확진 학생이 응시 기회를 편법적으로 이용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 훼손 우려
 - ※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다각도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합격자 선발이 목적인 수능·공무원 시험과 달리 학교 시험의 경우 학생의 학업성취도 파악이 주목적이며 수행평가 등 학습과정 중 여러 평가 방법이 있음을 고려하고, 확진자 응시가 가능하더라도 응시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, 인정점과 응시 후 실제 점수의 유불리 등을 따져 선택적 응시 하는 등의 편법적 행태는 교육적 측면에서 예방하여야 함

2. 엄중한 평가 시행 어려움

- ① 확진 학생 등교 관련 학생들의 심리적 동요가 예상되며, 이 경우 학생의 학습 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
- ② 별도 고사실을 꺼려하는 확진 학생이 검사를 미 실시하고 응시할 경우 시험 시간 동안 기침, 화장실 사용 등으로 고사 분위기를 훼손할 우려 및 타 학생의 이로 인한 민원 예상
- ③ 전국의 학교가 유사 수준의 방법 및 환경(학교별 별도고사실 운영 또는 미운영 여부, 체육관·강당·운동장·일반 교실 등 학교 간 별도 고사실 환경 차이 등)으로 고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고사 환경 및 여건의 차이가 미치는 평가 결과
- ④ 대입 등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되는 내신 성적임을 고려할 때 지역별·학교별 재량적 판단은 어려우며 전국 공통의 지침에 따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

3. 확진 학생 이동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 초래

- ① 확진 학생 등교에 따라 미확진 학생의 감염 위험 증가 및 감염 시 민원 제기 우려, 미확진 학생의 건강권 침해 우려
 - 특히 기저질환자 및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확진자 등교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응시 예상
 - 확진 학생 수, 증상 정도(치료 초기 단계 학생과 완료 단계 학생 혼합 등도 포함), 치료 기간 등이 매우 다양하여 구분되어야 할 별도 고사실이 너무 많음
- ② 등하교시 대중교통 이용 확률이 매우 높고, 확진 자녀를 학부모가 자가용으로 이동시킬 경우 확진자 부모도 중간고사 기간 동안 외출 불가피
 - 농어촌 등 학교까지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지역의 경우 감염병 확산 우려도 증가
- ③ 학교 인근의 주민, 통행자 등 불편도 고려되어야 함

4. 방역 등 학교 감당 범위를 초과한 업무 폭증

- ① 방역물품 구비 정도, 유힬교실, 교사 수 등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일부 학교에서는 별도 교사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
 -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원 수가 적어 더욱 어려움
 - 확진 학생이 자가용, 방역 택시 등 별도의 이동수단 이용에 따른 학교 교통 지도, 확진 학생 교실의 쉬는 시간, 점심시간 등 학생 관리 교사도 필요
- ② 확진자 급식, 학교 소독 등 과도한 업무로 교사 추진 외 학교 업무 중단(평가기간 타 학년의 교육활동 등) 우려
- ③ 확진자 교사실 외에 기존에 운영해 온 건강관리 학생 대상 별도 교사실 운영도 해야 함

5. 기타

- ① 고등학생 대상 별도 교사실 운영의 경우 확진 중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으로 번질 우려
- ② 학교마다 중간고사 시험지, 다양한 선택과목 등이 다르고, 수능과 같이 국가적 지원없이 시험지의 외부 유출 등에 따른 보안유지 어려움 등으로 권역별 특정한 별도 교사장 운영 불가
- ③ 별도 교사실 감독 업무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배정하기 보다 건강상태,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정 교사를 중심으로 배정할 확률이 높고, 배정된 교사는 3~5일간의 교사 기간 동안 건강 관련 불안감 상승 우려